

환 경 부 설 명 자 료

- ☐ '05. 9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5쪽

수질보전국	박재성 과장	전화	02-2110-7647
수질총량제도과	양한나 사무관	(메일)	sophi@me.go.kr

5.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, 의무제로 전환 추진

- ◇ 환경부와 한강상류 7개 지자체, 주민대표간의 협의체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임의제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3대강 체계와 같은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 중
- ◇ 1년여의 논의 끝에 합의 임박

□ 정책개요

-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시장·군수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제이나,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의무제 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
- 오염총량관리제도란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·유지하기 위한 양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
 - 낙동강, 금강, 영산강수계는 의무제로 도입이 되어 '04년 8월부터 부산, 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, 한강수계는 법제정 과정에서 임의제로 변경되어 '05년 현재 광주시 1개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임

□ 의무제 전환 추진현황

- 환경부는 '04년 6월부터 팔당호 상류 7개 시·군의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

※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: '03.11월 팔당호 수질개선 및 팔당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(환경부 차관, 7개 시·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25명 구성)

○ 협의 초기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개발이 가로막힐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였으나

- 최근에는 지역발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

※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단이 환경부의 의무제 총량제 전환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('05.7.22)하고 성명서 발표한 바 있음('05.7.25)

□ 주요 쟁점

○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「수도권 정비계획법(건교부 소관)」 및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산자부 소관)」에 의한 자연보전권역(지역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

※ 수도권정비계획법: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㎡(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6만㎡) 이상 택지조성사업, 공업용지조성사업, 관광지조성사업을 금지. 단, 택지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시 20만㎡ 까지 가능

※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: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의 공장(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)을 신·증설 또는 이전, 업종 변경 행위를 제한

□ 환경부 입장

- 오염총량관리제는 시·군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적인 개발과 수질보전대책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로
 -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고시(400m²의 음식점 숙박시설, 800m²의 일반 건축물 건축 제한 등)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
- 팔당호의 목표수질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초기인 현 시점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는 곤란함

□ 향후 계획

- '05.9.26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방향 확정
-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하여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 마련 후 개정 추진

※ 붙임 : 1.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의 협의 현황

2.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구성개요

<붙임 1>

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의 협의 현황

- 환경부, 지자체, 관계전문가 등으로 “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담기구”를 구성('04.11.1)
-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담기구회의 개최 “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(안)”을 마련('05.3.11)
- 6개 시·군 “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(안)”에 대한 내부방침 확정('05.3.25)
- 실무위원회 개최 “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(안)” 확정 등 회의 일정 협의('05.4.14)
- 6개 시·군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 면담, 시군 건의 사항 전달('05.4.25)
- 제3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의제하에서 총량제 추진일정과 의무제 전환의 한강법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, 회의개최 무산('05.4.27)
-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“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(안)”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키로 재협의('05.5.20)
- '05.6.14 제3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, 의무제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한강법 개정방향은 합의하지 못함
 - 지자체 입장: 현행 임의제 하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추진 일정에는 동의하나 의무제로의 전환은 추가 논의가 필요

- 환경부 입장: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는 의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

⇒ 실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안건을 재상정기로 함

- 환경부, 한강유역청, 주민대표단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 모색('05.7.8)
- 팔당지역 6개 시·군 방문, 의무제 총량제 전환방향 협의(7.18~25)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, 의무제 전환방향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양평 등 일부 자치단체 반발로 합의 무산('05.7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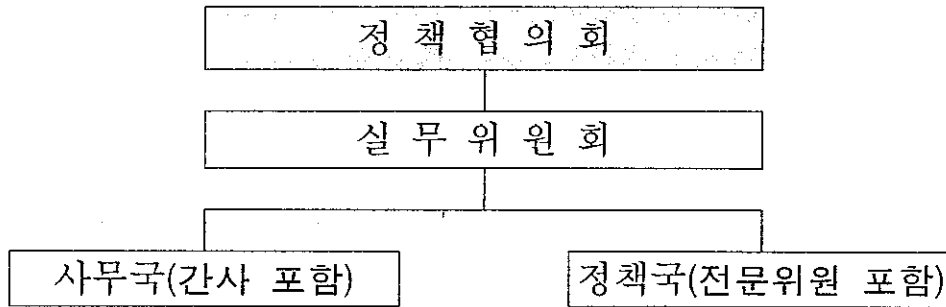
⇒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보전권역(지역)의 규제완화와 병행 주장

-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부의 의무제 총량제 전환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('05.7.22)하고 성명서 발표 및 장관님 면담 요청('05.7.25)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과 장관님 면담 실시('05.8.12)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('05.8.26)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('05.9.1)
 - 한강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,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
 -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완화 연계처리를 주장하여 실무합의 유보
- ⇒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무제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대하는 지자체가 내부적인 입장을 다시 정하여 협의기로 함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('05.9.15)
 - 의무제 전환을 최종합의기로 함
-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개최 최종합의 예정('05.9.26)

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구성개요

□ 조직

- 정책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과 정책국을 둠



※ 협의회의 제도적 근거는 환경부 훈령으로 함

□ 협의회 구성 : 총 26명

- 환경부차관
 - 환경부차관의 참석 및 협의에 대한 권한을 수질보전국장 및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
- 경기도 행정부지사
- 가평 · 광주 · 남양주 · 양평 · 여주 · 용인 · 이천 7개 시 · 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
- 지역주민대표 9인

□ 실무위원회 구성(20명)

- 환경부 유역제도과장, 한강청 · 경기도 · 시 · 군 담당과장, 협의회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, 주민대표선임자 7인

□ 기능 :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

□ 운영 : '04.5 협의회를 통해 팔당호특별대책고시 개정 협의